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20. 4. 29.(수) 10:00	담당부서	관세청 수출입물류과
담당과장	하유정 042-481-7820	담당자	이나에 042-481-7637

관세청,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산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

□ 관세청(청장 노석환)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.

※ (면세점)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세법 상의 특례구역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곳

□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면세점의 재고 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하여 왔으나, 입출국 여행객이 93% 감소(3월기준, 전년 동기 대비)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.

○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 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,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하여 허용된다.

- 또한,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*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,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.

※ (예)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정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 구비 필요

-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,

-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,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.

- 한편,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,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,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 지원 등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 왔다.

-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%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,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, 앞으로도 면세산업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1. 일반 국민이 면세점에서 재고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?

-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별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 될 예정입니다.

2.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 가격으로 파나요?

- 국내에 판매 될 면세점 재고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 된 가격이 아니며,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3. 면세점 재고물품은 어디에서 구입 가능한지?

- 면세점 재고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. 수입통관 시 면세점의 특수관계자(계열사 등)에게 직접 판매 해도 되는지?

- 면세점 재고물품판매 대상 업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.

5. 수입통관이 가능한 상품과 재고물품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?

- 수입통관이 가능한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점에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물품으로 한정하며, 품목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.

6. 수입통관 전 세관장 확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?

-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【별표2】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물품별 해당 구비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.

7. 재고상품에 대한 기간별, 품목별 감가상각률 기준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?

- 면세점 재고물품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, 「관세법 제30조」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.

8. 수입통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?

- 면세점 재고물품의 과세가격은 「관세법」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다만,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사실,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, 「관세법」 제37조에 따른 ‘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’를 이용하여 사전에 과세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한다면 사후심사로 인한 추징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으로는 사전심사 신청서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9.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외 반송은 가능 한지?

- 면세점 판매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외 반출은 엄격히 제한되며, 국외 반출의 경우 물품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되었으나,
- 면세점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재고물품의 수입통관 허용과 더불어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대한 반송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.